제 113 호 / 발행일 2012년 11월 5일

#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eas.or.kr) / 주소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09호 발행인 허병기 / 편집인 김민조 권순형 / TEL 043-230-3413 / E-mail kssea1@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eas.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한국교육의 실상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한국교육은 최 근까지 화려한 지표가 말해주듯이 교육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충실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른 한편,부정 적 측면에서 학교교육 역량이 취약하고,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본질로부터 이탈되어 제자리를 찾 지 못하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멀쩡한 모습인 데 속은 망가져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점은 한국교육의 잠재적 가능성이 막강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교육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숱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교육의 중심'으로서 '학교'에 초점을 맞추어 단위학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 인지를 밝히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위해 어떠한 접근이 요구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변화되지 않는 학교

한국 학교가 공교육의 내실화와 선진화를 향해 나아 가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기대한 만큼 변화되지 않고 있 다. 여전히 교육기회의 측면에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 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학생이 적지 않고, 학습 낙오자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확실하지 못하다. 학교 현 실은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잠재적 역량을 키워주지 못 하는 패스트푸드 (fastfood) 모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도리어 창의력과 자기 주도 학습 기력이 약화된다.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은 표 방된 교육목표와 상당한 괴리가 있고,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내는데 취약하다. 학교장은 여전히 자율적이고 창 의적인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입학 준비에 기력을 소진한 나 머지,머리와 가슴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태에 있 다. 학생의 경우, 대학입시 준비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 의 꿈을 찾아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로를 찾

1

교육행정학연구 별책



아나서지 못하고 있다. 마치 학생은 중병에 걸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산만하고 나약하며 지구력이 없을 뿐 아니 라, 우울하며 이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치유하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학교폭력과 인권 주장으로 학교 기본질서는 혼미 상태에 있다. 창의 인성 교육상담지도부, 지도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 적으로 교육 차원에서 지도를 포기한 상태라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이다.

교사는 학교조직에서 자신의 비범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문적 수월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비록 최고 수준의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지만, 교사들의 교육 력 신장을 유도·촉진·조장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으 로교사의 역량은 신장의 기회를 점차 상실하게 되고,무 기력화 되고 있다. 게다가 교사는 본질적인 고유의 수업 업무 준비에 몰두할 수 없다. 행정 및 정책 지원 업무등 수업 외적인 업무를 상당한 정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게다가 교사의 직무의 성격이 교육 현장에서 전 문적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만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 하는 직무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다. 도전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창조적 노력을 기울일 만한 역할이 주 어져 있지도 않다.

학교개혁 정책 측면에서 정부와 학교현장 간 부정합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건강한' 경쟁과 자생 적 변화를 창출하는 활력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 다. 지금까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교 육행정기관, 즉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중점 기능 을 전환하여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컨설팅 장 학을 통하여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단위학교 자율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 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외형적 변화에 비추어 학교 현 장의 내적 자생적 변화의 속도는 기대에 못미친다. 교원 의 자발적인 변화 의지와 동기 부여를 창출하고, 단위학 www.keas.or.kr

교 내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한 동력 추진 체제를 만들 어내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상과 같은 학교교육 '체제'의 부실은 학교개혁 추 진을 위한 접근방법의 취약성, 전통적인 개인 중심의 수 업 준비체제의 한계, 학교경영체제의 낙후성, 그리고 교 사 역할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그렇다면, 어떻게 학교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교사의 역량을 결집하여 학교를 탈 바꿈시킬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까?

#### 학교개혁을 위한 과제

학교개혁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효과적' 학습을 할 수 있고, '좋은' '효과적' 수업에 접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위해서 학교개 혁의 첫 발걸음은 학교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학교 장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새로운 창조적 경영을 가능 하게 하는 학교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학 교 조직은 변하지 않으려 하는 관성과 타성으로 새로운 창조적 경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창의성을 길러내야 할 학교가 도리어 학생의 창의성을 죽이고, 잠 재적 재능을 발휘하는 일을억제하며, 건전한 인성을 불 건전한 인성으로 길러내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학교조 직의 변화를 통해서 모두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 는 자유로운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학교조직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학교의 자율 역량 신장은 모든 교육개혁 아젠다의 성공 실패를 결정 짓는 요인이며, 동시에 한국교육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다. 물론 '학교체제 내부로부터의 변화' 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 자율과 자치의 토대를 확실하게 조성해 나가는 일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학교개혁의 초점을 개인 역량 신장 뿐 아니라, 학교 조직의 역량 신장에 집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 교에서 교사 개개인의 역량 신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사의 개인 역량이 조 직의 역량으로 모두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실상 단위학 교에 수많은 비범한 재능과 역량을 갖춘 교사들이 있지 만 학교가 새롭게 변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학교조직은 교사의 탁월한 개인 역량을 억제할 수밖에 없고, 발휘될 수 없도록 한다. 달리 말하면 교사의 개인 역량을 이끌어내고 학교조직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탈바꿈되고 학교의 조직역량이 신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개인 역량을 조직역량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효 과적인 질 관리 팀을구축하고 팀을 통해서 팀 구성원으 로 하여금 잠재적 재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내 는 학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팀 관리 역량은 개인 간 협력을 통하여 집단 조직의 역량 (capacity)을 만들어내고 (O'Day et al. 1995), 개인 간 경쟁 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효과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 는 것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반드시 경쟁을 붙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경쟁보다 적절한 보상에 초점을 둔 집단 협력체제는 개인 및 집단의 생산 성,개인의 학습,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 과업태도, 그리 고 다른 집단 구성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데 보다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Morton, 1985:196).

네째, 학교개혁은 학교조직의 성과에만 초점을 두는

####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것이 아니라, 성과를 얻기 위한 전 프로세스의 질적 관리 에 초점을 두는 총체적 질 경영 역량 신장에 초점을 두 어야 한다. 질 경영이란 조직 운영의 모든 수준에서 수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다. 조직 내 질 관리 는 분리된 기능의 하나가 아니라, 최종 산출물을 만드는 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섯째, 학교개혁은 개인이 지식과 내용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방법 및 기술을 활 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tool)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새 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학습을 이끌어 내고자 할 때 도구의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는 다 름 아닌 컨설턴트이다. 팀 구성원은 모두 상호 컨설팅을 할 수 있고 학습을 일으킬 수 있는 러닝코우치 또는 컨 설컨트로서의 자질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신장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개혁은 학교조직 내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구 성원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조직을 수업중심 체제로 일원화할 수 있 어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공교육체제 내부의 수업 체 제와 학교경영체제의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 한 관심이 요구된다. 교원 개개인의 전문적 능력개발과 학교조직 내 수업경영체제의 구축,이 두 가지 측면의 변 화는 동시에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공정성은 학교교 육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학교현장에서 '좋은', '효과적' 수업

을 마련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어느 학생이든지 수 월성 있는질 높은 수업을 접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단 위학교에서 개인의 노력과 열정을 조직의 팀 구성원의 팀워크를 통해서 조직의 역량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학 교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학교조직 내 수업경영 체제가 구축될 때, 좋은 효과적 수업을 창출하기 위한 교사의 열정과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성공적인 학교개혁을 이끌어 내려면,학교조 직은 개인 역량을 팀 학습을 통해서 조직역량으로 전환 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 어난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역량이 탁월해지는 것은 아 니다.조직의 역량은 체제효과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각각의 능력을 하나의 조 직역량으로 묶어 하나의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 단위학교마다 업그레이드된 자율역량 신장을 위한 추진 동력장치(engne)를 마련하고, 아울러 단위학 교마다 창조적으로 자율역량 신장을 할 수 있도록 자율 권을 확대하는 법 제도적 지원, 정보지원 네트워크를 구 축할 수 있어야 한다.

www.keas.or.kr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 관점에서 본 지방교육행정기관 개편 과정\*

김민희 | 대구대학교

## 1. 서론

지방교육행정기관<sup>1</sup>에 대한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본격적으 로 개편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의 과정은 대부분의 국가주도 교육정 책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처음시도한 지역교육 청의 교수-학습센터 전환 계획은 각 시·도교육청의 반 발과 교육계의 논란으로 우회하게 됨으로써 규범적 차원 의 주장이 실천적 차원으로 정착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 렵다는 점을확인하였다.

논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2010년 교 육지원청으로의 전면 기능개편은 다양한 부작용과 반발 을 부침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년 시범운영 평가를 거쳐 2013년 전면 실시가 예고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는 지역교육청의 센터 직제화,본 청 및 직속기관 조직과 인사 등 거시적 차원의 개편을 요 구하고 있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고 정착시켜 나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초 구상한 정책과 기대효과가 제대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그 존재 목적 중 하나가 단위학교 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무리 학교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지원보다는 권위적인 상위기관으 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존재한다면 지금 이루어지는 개 편은 상당부분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편이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은지방교육행 정기관의 개편 과정이 기존의 형식적 수용을 따라 갈 것 인지, 그 존재 목적에 비추어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개혁 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되는 개념의 하나가 경 로의존성 (path-dependency)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의 존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개편 과정, 특히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과정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경 로로의 이탈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sup>\*</sup> 이 글은 2011년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김민희(2011),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의 현황과 쟁점'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 었음

<sup>1)</sup>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각급학교, 보조 기관, 보좌기관 등이 이에 속한다'(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참조)

## 11. 경로의존성과 제도 개편

경로의존성은 본래 기술변화과정 자체가 자기강화적 이라는 성격을 묘사한 것으로, 신기술의 선택이 종종 수 확체증(increasing return)의 특성을 지니게 됨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념은 정책분석이나 제도적 맥락 으로 적용되어 특정 제도나 정책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 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광의의 경로의 존성은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 이전단계와 이후 단계의 인과적 관련성을 의미하는데, 시간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이후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 순열의 가 능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협의의 경로의존 성은 국가 또는 지역이 일단 특정 노선을 선택한 경우에 는 이후에 이를 되돌리는데 비용이 너무 높아서 초기 선 택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결국 제도 변천의특징은 과거의 경로에 의존하여 점진적으로 변화 하며, 경로의존은 자기강화적 경로와 환원적 연결고리, 변화의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로의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도의 자기강화기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강화기제는 일정한 제도적 패턴이 한번 채택되면 지속화를 통해 편익의 증대를 가 져오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패턴을 변화시 키기 어려우며 더 효율적인 새로운 대안이 존재할 경우 에도채택되기 어렵다는점을 의미한다.자기강화기제는 제도의 관성과 매몰비용, 학습효과, 네트워크 효과, 조정 효과, 적응적 기제, 속박 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매몰 비용은 일단 선택된 특정 경로는 높은 매몰비용(고정비 용)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틀이다. 고 정비용은대규모 초기비용과 관련되며 행위자들은 특정 제도에 대규모 투자를 했을 경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 해 제도를 지속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학습효과 및 네 트워크 효과는 특정 제도 내의 행위자들이 시간이 경과 하면서 그 제도에 익숙하고 정통하게 되며,더 많은 사람 들이 동일한 경로를 채택할 수록 편익이 증대되는 현상 이다. 제도적 속박으로 설명되는 자기강화기제는, 학습 과 습관으로 인한 불가역성으로인해 비효율성과 부분최 적화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경로의존적 행태를 보이 게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경로의존적 관점이 제도의 지속화 및 강화를 설명하지 만, 단절적 균형, 과거 또는 가외의 제도적 대체목록, 유 일 최선의 대안, 국가 지도자의 의지, 기존 제도에 대한 개혁에의 강력한 관심, 급진적 조치를 시현하려는 단기 적 욕구 등에 의해 기존제도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이동 하는 '경로이탈'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제도의 변화는 기존 제도의 지속및 강화적 측면 뿐만 아 니라 경로이탈적 측면으로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설명력 을 높여나갈 수 있게 된다.

## III.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본 지방교육행정기관 개편 분석

#### 1. 제도적 관성 : 국가주도 교육정책 형성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자기강화기제의 가장 중요한 것 은 '제도적 관성'이다.제도적 관성은 매몰비용으로인해 일어날 수 있는데,국가나 지역에서 선택된 특정 경로(행 동 노선)은 높은 매몰비용(고정비용)으로 인해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매몰비용은 대규모 초기비용과 관련되어 특정 제도 대규모 투자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비용을 충 당하기 위하여 그 제도를 지속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된 다는점이다.

2010년 시작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과정 역시 제도 적 관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에서 시 · 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성격을 가진 지 역교육청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먼저 발표한 후 교육청 의 거센 반발로 우회하였지만, 2009년 10월 군포 · 의왕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기능개편 시범교육청 4개 기관 선 정, 2010년 4월에는 교과부 장관이 제2차 교육개혁대책 회의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한다는 방 침 보고, 같은해 6월 관련 법령 의결로 '학생, 학부모, 학 교 등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인 교육지원청이 전국적으 로 일시에 탄생하는 급속한 과정을 거쳤다. 전국의 178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전환된 이후, 정부에서는 2011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개 편' 사업에 89억원을 편성하여 단위학교 컨설팅장학 현 장안착 지원 75억원 등을 사용하였다.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이 진행되어 온 정책 형성과정, 법령개정 과정 및 정치적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앙정 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 평가 및 통제 등은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편의 과정에서 전체 시·도교육 청 담당자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이 수차례 개최되었고제도 개편의 내용과 방향이 협의되었으나 대부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가 이드라인을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2010년과 2011년도에 걸쳐 지역교육청 기능·조직개편에 대한 시·도의 반발 과 갈등, 이행의 어려움, 기능거점 운영에 대한 불만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정작시·도가대응할 수 있는 권한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자율화, 분권화라는 정책 기조에 맞게 자치역량을 강 조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불만 등적 정책 형성 영향력 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관료의 사고와 신념 체계, 즉 권력유지 성향과 통제관성이라는 기제를 활용 하여 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지 방으로의 권한 이양이나 자율권 부여를 위한 기타 제도 개편(예컨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에는

7

소극적이면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등에 대해서는 상당 히 적극성을 띄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 으려는 중앙 관료들의 자기모순적 권력유지 기제라고볼 수 있을것이다.

#### 2. 네트워크 효과 : 유사한 조직, 동일한 기능거점

네트워크 효과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경로를 채 택하면 그에 대한 이득이 증대되는 현상이다. 대부분 제 도 변화 초기에 유사한 형태의 정책이 형성되어 가는 현 상으로 나타나는데, 네트워크 효과와 함께 상호적응하면 서 영향을 미치는 자기강화기제는 학습효과, 조정효과, 적응적 기대 등이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경로를 채택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일어나 제도에 점점 익숙해지고, 조정효과가 개입되면서 특정 제도는 더욱 더 강화되어 나간다.

2010년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5 가지 기능개편 모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 과 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상호 네트워크 효과 및 조정효과,적응적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동일한 개 편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예컨대, 기능거점 모형을 단 행한 6개 도의 경우,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시설 거점 기능 모형을 모두 동일하게 채택하여 운영하였으 며, 전산과 보건·급식도 5개 도에서 채택하였다. 일부 시 · 도에서는 특수, 영재, 교육복지 등의 일부 특수 기능 에 한정하여 거점교육청 운영 모형을 택하였다. 이 과정 에서 기능거점 모형의 적용은 시범운영을 거치지도 않은 채 전면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과 업무체계 혼선 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시 말해 거점교육청 운영 에 대해서는제한된 인력 및 예산의 집중 운영을 통한서 비스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장점은 다소 있으나, 지역 적 특성에 기인하지 못한 거점교육청 운영으로 인해 업

무체계 혼선 등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단위학교 지원도 효율적이지 않게 되었다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과정에서의 네트워크 효과는 조 직개편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중 본청과 지역교육청은기구설치 기준(실 · 국 · 과 및 담당 의 수)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 따라 각시·도교육청에서는 2국6과, 2과 체제 지역교육청의 조직 명칭 및 담당 업무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이 유사한 조직개편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교 육청 기능개편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오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직진 단 등을 거쳐 기능개편 이전의 조직구조로 다시 회귀하 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A도 산하 B교육지 원청의 경우, 기존의 기능중심 조직 개편 최근 조례개정 으로 다시 이전의 대상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개편을 다시 단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하 겠지만,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리 · 감독이 강화되거나 평 가가시행되지 않을 경우일부시 · 도교육청에서 기존의 제도적 경로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네트워크효과 및 적응적 기대 등의 기제를 통해 현행의 기능 · 조직개 편은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패러다임 변화까 지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더욱어렵게 하게 되고, 결국 제도적관행을 지속화시키는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 3. 속박(Lock-in): 형식적 개편에 따른 조직, 인력, 예산 미이관

특정 제도를 존속시키는 경로의존성 기제 중 속박 (lock-in)이란 행태적 속박(behavioral lock-in)이라고도 불리며, 학습과 습관으로 인한 불가역성을 의미한다. 즉 습관,조직학습, 문화 등에 의해 일종의 비효율성 도는 부 분최적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도적 압력, 권력과 통제의 유지 성향, 현상유지적 관성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속박은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과 비효율적인 현상을 설명하는테 적용할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주도적 제도 개편이 이루 어지면서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당시 대부분의 시·도교 육청에서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유사한 조직개편과 동일한 기능거점 모형을 채택하 였다. 그러나 기능거점 모형을 택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 실태조사 결과,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 은 단행하였으나 관련 인력 및 예산을 기능 거점교육청 으로 이관하지 않는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 도교육청에서는 기능및 조직개편은 실시하되 관련 교육 장 회의에서 시설관련 예산 이관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본청에서도 시설 관련 인력을 교육 지원청으로 배치하지 않았다. K교육지원청의 경우,조직 개편은 대상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되었으나 업무는 분리되어 있고, 컨설팅 장학을 비롯하여 고교업 무는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었으나인력 및 예 산의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설 거점을 운영하는 G교육지원청의 경우, 비거점에서 예산수립 및 계약업무 를 담당하고, 거점에서는 비거점지역의 시설사업조사, 설계,감독,검사를 하고있으며,사전입행을 위해 시설거 점, 비거점 양쪽에서 모두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정절치를 매 사업별로 해야 함으로서 시간적, 인력적 으로업무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즉 기능거점 모형에 따른 조직개편을 시도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 업무프로세스, 예산조정 등 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가 폭주하며 복무상의 문제점 등도나타나고있다.

www.keas.or.kr

교육지원청의 기능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새로운 기능에 따르는 담당업무프로세스의 변화 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장학의 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는 컨설 팅 장학의 절차는 기존의 요청장학 혹은 맞춤형 장학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물 론 이러한 현상에는 컨설팅 장학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내적 모순도 한 몫을하고 있으나, 컨설팅 장학의 의 미있는 개선보다는 실적 위주의 평가라고 하는 속박 (lock-in)에 갇힌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Ⅳ. 경로이탈: 지방교육행정기관 개편, 새로운 문화 창출

경로의존적 관점은 기존제도의 지속화 현상을 설명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제도 변화는 불 가능한 것인가? 경로의존성을 탈피하는 과정을 경로이 탈이라고 부른다. 즉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기존의 제도변 화가 일어나는경로이탈이 이루어지고,이러한 경로이탈 은 다시 새로운 경로의존적 제도변화를 지지한다. 외적 충격, 유일 최선의 대안, 제도의 논리변화, 대안적 경로를 보여주는 역할 모델의 존재 등이 경로이탈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다 단기적으로는 지도자의 의지, 기존제도로부터의 수확체감 인식, 개혁에 대한 강 력한 관심, 급진적 조치를 시현하려는 단기적 욕구 등도 매우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이 기존의 경로를 이탈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경로이탈 기제들이 작동해야 한다. 그러 나 현재와 같은 체제 하에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 지원청에 대한 인력 증원, 예산 증액, 문화 및 풍토 개선 등을 개선하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이렇게 볼 때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의 목적과 취지에 대 해 공감하고 여기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지만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기존의 경로의존을 벗어 나 경로이탈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경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규정 개정을 통해 인구수와 학생수를 중심으로 2013년 본청 기구 확 대,지역교육청에 대한 센터 직제화 기능을 추가함으로 써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개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 기 위해서는 이번 개편으로 경로이탈의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개편은 새로운 경로로의 이탈 가 능성 조건을 몇 가지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교육현장공감형 기관으로 거듭나 야 한다는 논리는 많은 공감을 얻고 있고 또 향후에 도교 육지원청을 포함한 전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새로운 행 정수요와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갈 것 이다. 개혁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와 관심 또한 긍정적 영 향을 주고 있다.즉 경로이탈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인 인 지도자의 의지와 대안적 경로를 보여주는 역할모텔 등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사의 수업과 학교의 자율적 경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의 논리가 더 보완된다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학교 지원 기능은 현재보다더 강화될 수 있을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행 정 풍토와 문화를 바꾸는 방향성을 지니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와 풍토는 서비스 현장에서 직접 적으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학습하고 적용하고 변형 하고 반추해볼 시간적 여유를 줌과 동시에, 이들이 최선 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리더십 하에서 가능하다. 컨 설팅장학 횟수 등으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의 성과를

www.keas.or.kr

측정하는움직임은새로운 문화로의 이동을 차단하고여 전히 똑같은 방식의 문화를 재생산한다는측면에서 상당 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향후 지방분권과 자율화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조직 관리 운영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 며, 새로운 행정수요와 교육수요 역시 끊임없이 늘어나 고 있다. 2013년실시되는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 는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배치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제 도 개편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대안적 경로를 보여주는 모텔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 야한다.

이제는 지방이 정책주도성 (이니셔티브)을 지니고 정책 을 추진하는 제도적 관성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이 다. 지역주민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정책형성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교육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 다.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 기구·정원 규정 개정이 그 실마리를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중앙정 부에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으로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도 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에서는 자율성 과 책무성 기제를 마련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지역교육청, "학교현장 지원 기관"으로거듭난다 보도자료. 2009. 10. 22.
- 교육과학기술부(2010).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 직개편 방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 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3년 시·도교육청 총액인 건비세부 시행계획(안).
- 김민희·정성수·김숙이(20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운영 진단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서범종·김민희·박수정·이지혜(2011). 「지역교육 청 기능거점 모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 국지방교육연구소.
- 서범종 · 이희수 · 오세희 · 박수정 · 이지혜 (2011). 「지역교육청 기능 · 조직개편 이행상황 진단 및 컨 설팅지원 방안」.한국지방교육연구소.
- 하연섭(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36(4). 339-359.
- 하혜수·이달곤(201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경 로의존성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303-324.
- Arthur, W.B.(1994). *Increasing Returns and Path Dependence in the Economy.* Ann Arbor, MI: Univ. of Michigan Press.
- Gains, Francesca, Peter C. John and Geny Stoker. (2005). Path Dependency and the Reform of English Loc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83(1). 25–45.
- Pierson, P.(2000).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 251–267.

####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www.keas.or.kr



[논단표] 한국과 일본의 학교폭력 현상과 대응 비교\*

#### 1. 학교폭력 : 어두운 학교의 모습

지난 연말 이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실이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이 슈들이 오랜 기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다른 이슈로 관심 이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 력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 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크게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로 나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사전 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 식을 바꾸고, 나아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학교문화 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에서도 학 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지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지속해 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유교문화권이라는 유사성도 있지 만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의 원인과 현상, 대응에 있어서도 유사성과 차이점을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현상 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는 것은 매 우 의미있는일이다.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 11.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현상과 대응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매년 "초·중·고등학교 아동 학생의 문제행동 등 학생 지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 조사에서 "학교폭력이란 아동학생이 일정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리 적,물리적인 공격을 받아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일어난 장소는 학교 내외를 가 리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폭력적인 것과 정신적인 문제로 나누고 있다. 폭력적인 학교폭력 은 물건 숨기기, 물건 파손, 금전강탈, 협박하여 어떠한 행동을 강요하기, 때리고 걷어차기 등의 폭력을 휘두르 는 등 물리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반면에 정신적인 학 교폭력은 외톨이, 무시, 무언 등의 불쾌감이나 정신적 타 격을 주는 심리적인 것이 있다.

특히 최근 일본 학교폭력의 경향으로는 어른이 발견하 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지메가 음습화(陰濕

<sup>\*</sup> 이 원고는 2012년 10월 26일에 개최된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에서 토론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sup>1)</sup> 일본의 학교폭력 현상과 대응 사례는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에서 이이지와 타카오 국립대학법인 도쿄해양대학 사무국장이 발표한 자료를 요 악한 것임.

www.keas.or.kr

化되고 있는데다가 이지메의 대상이 매일 바뀌기도 하 고 이지메 당하는 아이와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가 교체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 현대 어린이 사회의 복잡한 인 간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지메의 가 해자,피해자 모두 교사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라고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지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2년 9월 5일에 "이지메,학교안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처 방침 -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를 발표 하였다.이 방침은 본적으로 ①학교 · 가정 · 지역이 하나 가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며,② 국가 · 학교 · 교육청 의 협력강화, ③ 이지메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대응의 촉 진,④ 학교와 관계기관과의 연대 촉진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는 다음 4가지 대처 방안을 제 시하였다.① 학교·가정·지역이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대처 ② 학교·교육청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대처 ③ 이지메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대응의 촉진을 위한 국가의 대처 ④ 학교와 관계 기관의 연대 촉진을 위한 국가의 대처 등이다.

문부과학성은 이와 같은 대처 방안을 기반으로 하여 2013년도 예산을 2012년보다 약 27억 엔이 늘어난 약 73 억 엔을 책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 및 지자체에 외부 인재의 활용으로 이지메 문제의 지원 체제 구축(약 4억 엔), 둘째, 도덕교육의 추진이나 체험활 동의 추진 등, 이지메 미연방지 대책(약 9억 엔), 셋째, 교 육 상담이나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조기발견 및 조 기대응(약 47억 엔), 넷째, 교원연수의 충실 등(약 9억 엔), 다섯째, 이지메 대책 등 학생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약 4 억 엔) 등이다.

#### Ⅲ.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현상과 대응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전국 139만명의 학생이 응답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를 보면, 전체 응답 학생의 123%인 17만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다(교육과학기 술부, 2012.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에서 지 난 4월 발표한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비율은 18.3%, 가해학생 비율 은 15.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학교폭력 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최근의 학교폭력 상 황은여섯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의 문제이다. 청예단의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초 학 교폭력 피해 시기가 초등학교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이 2010년에는 534%였는데, 2011년에는 727%로 높아 졌다.

두 번째, 학교폭력의 집단화(集團化) 문제이다. 청예단 의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학생 중 67.9%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 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의 66.2%에 비해 증 가한수치이다.

세 번째,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화(多樣化)되고 있다 는 점이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단순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강제적 심부름(금품갈취 포함), 사이버 폭력, 성적 모독 등 언어적·정신적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의 심각한 특징은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에 재발(再發)과 보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처음 피 해를준 가해학생이 보복 폭행을 하거나(440%), 처음 피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해를 준 학생이 친한 학생과 함께 다시 폭력을 행사 (334%)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가해경험이 2회 이 상인 비율이 61.1%에 이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2.

다섯째, 한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피해와 가해가 악순환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내 소위 '일진' 학생을 정 점으로 학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서열구조가 존재하 며,이러한 서열구조의 중간에 위치한 학생은 가해와 피 해를모두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여섯째, 학교폭력의 실상보다는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 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예단의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은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해율도 오르고내리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 에 대한 심각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에서는 2012년 2월 6일에 '학교폭력근절 종 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4개의 직접 대책과 3개의 근본 대 책으로 구성하였다. 4개의 직접 대책은 "사소한 괴롭힘 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첫째,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둘째, 신고-조사체 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셋째, 또래활 동 등 예방교육확대, 넷째,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이다. 3개의 근본 대책은 "학교-가정-사 회가함께 인성교육을실천"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전반 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둘째,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셋째,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등이다.

#### Ⅳ.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과제

학교폭력을 해결해나가는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야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아래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학교폭력 관련 위기의 학생을 조 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전 생애에 유아교육과 학교교육 에 재학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이며, 이 시기가 인생 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 아이들이 하루 중에 서 많은 시간을 교육기관에서 보낸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문제 발견(screening)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래 상담, 역할극, 멘토링 제도 등 학 교에서의 따뜻한 관심과 대회를 통한 학교 안 프로그램 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어낸 사례들도 많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 다양 한 형태의 지원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학교수준에서 관리나 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문적 상담과 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과 조기개입을 연계하는 역할이다. Wee 센터를 중 심으로 다양한 교육기관, 치료기관 등이 연계된 학교폭 력 대응 체제가 구축되고 유기적인 연계 아래 협력적 지 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학교폭력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와 지원 이 계속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한 처방과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학교의 문화를 바 꾸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현상에 대 한 분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학교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가해학생 과 피해학생의 조치의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www.keas.or.kr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소수 학생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학 교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 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 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 사 결과 중간 발표(2012년 3월 14일자 보도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 태조사 연구.
-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2).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 엄 자료집.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www.keas.or.kr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 · 학회 활동 안내 ·

##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안내

#### 전 제 40 차 연차학술대회 개최 안내

- 일시: 2012년 12월 15일(토) 09:30~18:00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윌센터 2층 대강당
- 주제: 한국 교육책무성 탐색

#### 학회 회의 개최

#### 전 제6차 학술위원회 회의

- •일시: 2012년 8월 10일(금) 13:00
- 장소: 여월 한정식
- 안건: 추계학술대회 협의

#### 전 제 7 차 학술위원회 회의

- •일시: 2012년 9월 25일(화) 13:00
- 장소: 여월 한정식
- 안건: 추계학술대회 최종 협의

## 학회 주요소식

#### 전 제165차 추계학술대회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

####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 교육행정가, 교사 등 300여명 참여

'한국 교육행정의 새로운 담론 탐색 : 교육복지와 학교컨설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 165차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10월 12-13일 1박2일 동안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에서 개최된 이 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과 연구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교육행정가 및 교사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기획주제세션', '자유주제 세션', '학문후속세대 세션', '라운드테이블 세션', '워크샵 세 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조강연자 2명, 발표자 44명, 토론자 6명(기획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워크샵 발표자 4명 이 참가하였다. 기조강연에서는 안병영(연세대 명예교수)와 진동섭(서울대학교 교수)가 '교육복지와 한국교육', '학교컨설팅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기획주제세션에서는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지정토 론자의 토론과 청중토론이 진행되었고, 동시간대 세션장에서 자유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라운드 테이블

#### ☑ 2012년 제2차 정기총회 안내

- •일시: 2012년 12월 15일(토) 18:00~19:00
- 장소:서울교육대학교 에듀윌센터 2층 대강당

#### ☑ 제1차 소석논문상위원회 회의

- 일시: 2012년 10월 20일(토) 13:00
- 장소:원조 두부촌
- 안건:소석논문상 수상관련 1차 협의

에서는 총 9개 주제의 현안 교육정책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교육행정학을 공부하는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워크샵 세션'을 기획하였다.워크샵 세션은 양적 연구법(기초,심화)와 질적 연구법(기초,심화)로 나누어 12일과 13일 점심시간에 진행되었으며,각세 션장마다 연구자와 대학원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13일 기조강연 '학교컨설팅 회고와 전망' 진동섭 교수(서울대)



2일차 기획주제 종합토론 죄측부터 반상진 교수(전북대), 정수현 교수(서울교대), 김정현 박사(방송대), 정바울 박사(KED), 신철균 박사(KED), 허은정 박사(KED)



'교원 교직 환경 국제 비교 결과 분석'라운드 테이블 세션 김갑성 박사(KEDI), 박상완 교수(부산교대)



'연구법 심화(질적연구에서 문화기술연구법)' 워크샵 세션 서덕희 교수(조선대)



12일 기조강연 '교육복지와 한국교육' 안병영 명예교수(연세대)



1일차 기획주제 '교육복지 제도호를 위한 방향과 과제 탐색 좌측부터 고전 교수(제주대), 장덕호 교수(상명대), 임연기 교수(공주대)



'교과서 사용 실태에 따른 교육과정정책 고찰' 천세영 교수(충남대), 방인자 박사과정(충남대)



'연구법 심화(교육행정에서 메타분석 연구법)' 워크샵 세션 신인수 교수(전주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 ☑ 2012년도 제41대 부회장 선거

학회는 회칙 제15조에 따라 차기 년도(제41대) 부회장 선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학회 회칙에 따라 진행된 부 회장 후보자 추천에서 '김성열(경남대학교)' 교수와 '박세훈(전북대학교)' 교수가 최종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학 회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신상명)에서는 학회 회칙 제15조 6호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회원자격이 있는정회원을 대상으로 투표권자 명부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였다(우편 소인은 11월 16일분까지 인정). 본 선거 의 개표는 11월 23일(금) 예정이며 11월 25일(일)에 학회 홈페이지에 투표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 학회 회원 동향

• 정성수(대구교대): 대구교육대학교로 임용

##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⑦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1호	2월 28일	4월 30일
제30권	2호	5월 31일	7월 31일
(2012년)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0일	12월 31일

#### ☑ 논문 심사 적부 판정

2호부터 논문본 심사에 앞서 '교육행정학' 논문에 대한적부심사를 편집위원회에서 거칠 예정 ('적'으로판정되면 논문심사진행, '부'로 판정되면 심사비 환불및 심사진행 불가)

#### ☑ 원고분량

① A4용지 20페이지(참고문헌,영문초록 포함)

② 이를 기준으로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 심사료

100,000원(외국어 논문 십사료 150,000원)

www.keas.or.kr

#### ☑ 게재료

- ① 입금시기: 심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 게재료: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개제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 ③ 입금계좌: 신한 110-351-207590 예금주: 허병기 (교육행정학연구)
-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 기타

접수마감 당일 자정까지 접수하며 기한을 넘긴 논문은 다음 호심사로 이관됨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 신규회원 (2012년 8월 1일 - 2012년 10월 31일)

• 개인회원

이종철,이성은,박영하,하여진,정한나,최성열,이용진,한유경(학생회원),박민호(학생회원),성시경,정동욱, 권성연,신소영,이희춘,권순호,임용순,도명록,박영우,조옥경,김지혜,송태민,정재훈,윤현진,권오숙, 류주희,최금진,업문영,노명순,임소현,김보희,최문호,김복희,황보은,이상철,최승복,최상영,강이화, 장형심,이용호,방인자,이심경,이병호,신동선,권오숙,임근우,남지영(이상 41명)

• 기관회원

9월 11일 '연구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계좌이체 된 기관 회원이 있습니다(총무간사에게 연락바랍니다).

#### ⑦ 연회비 납입현황 (2012년 8월 1일 - 2012년 10월 31일)

• 개인회원

김태호, 나윤선,이명균,이기석,이상철(부산대), 손종호, 김재웅, 김선옥, 김시진, 김인희, 박균열, 장환영, 김현진, 이수진, 윤홍주, 박경선, 김지현, 김도진, 김창호, 조영진, 김이경, 이광수, 오찬숙, 나민주, 이낙종, 박세정, 박세훈, 이일용, 김양선, 문성윤, 류지은, 김미정, 한상연, 변광화, 유지영, 정지선, 유승오, 이태상, 박귀성, 박철웅, 홍창남, 천세영, 신동은, 이수정(이상 44명)

※ 연회비를 납부하시고도 위 명단에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학회 사무국 총무간사(010-2956-08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연회비 납입 시 반드시 '성명'과 '연회비'로 기재하여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후에 학회 메일(kssea1@harmail.net)이 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www.keas.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회 메일(kssea1@hanmail.net)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납부 안내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됨 니다. 아울러 회비가 2년 이상 연체된 회원들은 학회 홈페이지 자료 접근 제한되며 회원으로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회복은 학회 회칙제9조 내지 제10조를 참조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010-2956-0863 총무간사).
학회 회비가 연체된 경우는 학회 회원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습니다(학회지 배송, 학회지 투고, 소식지에 동향 기재, 부회장 투표권 등). 연체된 회비는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결재정보확인' 버튼을 누 르면확인 할 수 있으며 연체된 내역을 개인 메일이나 유선전화로 개별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연회비, 학 회 논문 심사비 및 게재료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연회비 안내

- •입회비 10,000원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회비납부: 110-351-208727(신한), 여금주 : 허병기(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 •신용카드 납입 가능(학회 홈페이지에서)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363-791)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09호
- E-Mail: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 043-230-3410
- •회 장:허병기(010-6268-6042)
- 부회장 : 이윤식 (010-3324-8166)
- 사무국 : 김민조 사무국장(010-9970-1305) 권순형 총무간사(010-2956-0863) 문영빛 편집간사(010-8859-8371)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용을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
   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 학회 회칙 및 학술지 발간규정 개정

학회회칙과 학술지 편집·발간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학회회칙은 총무간사(010-2956-0863)으로 학술지 발간규정은 편집간사(010-8859-8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학회 회칙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2010. 4. 24 제14차 개정	2012. 5. 12 제15차 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교육행정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라 칭한다 단 한국교육학회와의 관계에서는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 학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재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교육행정학회 <u>(The Korean Educational</u> Administration Society)라 칭한다. 단 한국교육학회 와의 관계에서는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부분개정. 2012, 05.12)	학회 영문 명칭 개정
<ul> <li>제6조(회원의 자격)</li> <li>③ 정회원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li> <li>1. 교육행정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li> <li>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분야의 강의를 담당하 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에서 교육행정 연구 에 종사하고 있는 자</li> <li>3. 초·중등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li> <li>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 은 자</li> <li>② 학생회원은 교육행정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li> <li>③ 기관회원은 교육행정학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 된 단체 및 기관, 도서관 등으로 한다.</li> </ul>	제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행정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분야의 강의를 담당하 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에서 교육행정 연구 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초· '중등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 는 자' 중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는 자로 학회장의 승인을 거친 자(일부 개 정 2012 5.12)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 은 자         ② 학생회원은 교육행정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학생 회원의 경우 전일제 학생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료를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부분 신설 2012 5.12)         ③ 기관회원은 교육행정학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 된 단체 및 기관, 도서관 등으로 한다.	회원 자격 요건 완화, 학생회원 자격 요건 입증관련 사항 삽입

##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www.keas.or.kr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ul> <li>제7조(회원의 권리)</li> <li>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학생회원 및 기 관회원은 제3호 및 제4호의 권리만을 갖는다.</li> <li>1. 총회참석 및 표결권</li> <li>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li> <li>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li> <li>4.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li> </ul>	지/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 일반회원은 아래 각호에 열거된 권리를 가지 며 학생회원은 3,4호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본 학회 회원 권리 유지기간은 회원 가입시점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분 신설 2012.5. 12).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회원 자격 유보 기간 명시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ul> <li>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유보)</li> <li>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li> <li>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li> <li>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li> <li>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li> <li>② 위 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외 유학 등 장기해 외체류기간으로 인한 미납의 경우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유학 등 장 기해외체류와 관련한 자료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부분신설 2012.5.12)</li> </ul>	회원의 자격 회복 규정 개정 및 회복 시
지110조(회원의 자격회복) 상기 제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 다. 단, 제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해외 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 중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ul> <li>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li> <li>① 제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학 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li> <li>② 제9조 제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 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 부한 다음, <u>학회장의 확인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u> <u>회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 5, 12).</u></li> <li>③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 회복에 따른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관계는 회복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 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12, 5, 12).</li> </ul>	권리 의무사항의 효력 규정 신설

## 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www.keas.or.kr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4월 24일부터 시행 한다.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4월 24일부터 시행 한다.	회원의
제2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자격 회복 규정 개정 및 회복 시
제3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 국교육학회의 회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3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 국교육학회의 회칙과 관례에 따른다.	권리 의무사항의 효력 규정
	제4조(제15차 개정) 본 학회 회칙 제15차 개정안은 201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한국교육행정학회 총 회 승인 2012, 5, 12),	신설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363-791)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09호
- E-Mail: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 043-230-3410
- •회 장:허병기(010-6268-6042)
- 부회장 : 이윤식(010-3324-8166)
- 시무국 : 김도기 사무국장(010-4708-0174) 권순형 총무간사(010-2956-0863)
  - 문영빛 편집간사(010-8859-8371)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용을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
   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